

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8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6.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「도시공원법」이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로 전부개정 되면서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과 녹지를 확충·관리하도록 규정하고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원·녹지 분야에 대하여 자문과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가.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과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서 위임한 사항.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공원조성계획과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(안 제24조).
- 나. 도시공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부시장이,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25조).
- 다.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(안 제27조).

□ 개정 조례안 : 별첨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·제50조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- 예산수반사항 : 3,640천원

· 참석수당 70,000원× 13명×4회 = 3,640,000원

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입법예고 : 2007. 5. 14 ~ 2007. 6. 2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(붙임)

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를 제29조로 하고,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공원녹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도시공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1.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
2.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
3.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25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공원녹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사람과 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.

제2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,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8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녹지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녹지과장 이규환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공원기획담당 원익희
	담당자 성명·전화	전훈택 (행정 2419)

신 · 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(안)
〈신 설〉	<p>제24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공원녹지에 관한 <u>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</u> <u>도시공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1.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</p> <p>2.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결정 <u>및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<u>시장이 부의하는 사항</u></p>
〈신 설〉	<p>제25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<u>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</u> <u>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위원은 공원녹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<u>식견을 갖춘 사람과 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</u> <u>위촉 또는 임명한다.</u></p> <p>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<u>업무담당국장이 된다.</u></p> <p>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<u>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</u> <u>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</u> <u>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u></p> <p>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<u>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</u> <u>한다.</u></p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〈신 설〉	<p>제2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한다.</p> <p>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
〈신 설〉	<p>제2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,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
〈신 설〉	<p>제28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p>
제24조(생략)	제29조(현행 제24조와 같음)

현 행	개 정 (안)
<u>〈신 설〉</u>	<p>제2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한다.</p> <p>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
<u>〈신 설〉</u>	<p>제2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,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
<u>〈신 설〉</u>	<p>제28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p>
<u>제24조(생략)</u>	<u>제29조(현행 제24조와 같음)</u>